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경숙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6조)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안 제7조~안 제8조)
-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안 제9조~안 제11조)

##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가. 발의배경

- 충청북도에는 24,526개의 1인 창조기업이 있고 이는 전국 987,812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57.2)			비수도권 (42.8)														계
경기	서울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전북	전남	대전	충북	광주	강원	울산	제주	세종	
28.0	24.0	5.3	6.2	5.9	4.6	4.3	3.4	2.7	2.6	2.5	2.5	2.4	2.3	1.6	1.1	0.6	100

-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강원, 경기, 경남, 부산, 세종, 충남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는 ‘서원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인프라 무상지원, 창업 기본교육 및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멘토링 분야 지원을 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1인 창조기업만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고 구체적 육성 및 지원 정책이 미흡함
- 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

## 나. 제정안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타당성을 확보함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을 근거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명확히 하였다 판단됨
-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하고 자원 확보 노력의 책무를 부과하여 조례의 효용성을 확보함
- 안 제5조는 도지사에게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육성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였으며, 육성계획을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정책과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는 안 제5조의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와 시·군, 관련 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육성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재정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안 제10조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를 입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타당한 규정이라 판단됨

#### 다. 관련 법령 등 검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해당 법률을 통해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지정,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해외진출 지원, 금융지원, 조세특례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한 금융지원과 조세특례 사항 이외의 지원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시·도 사무인 자치사무로 볼 수 있기에 조례로 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내용 중 자치사무 발취〉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와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생략 6) 생략 7) 생략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와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생략 5) 생략 6) 생략

라. 종합의견

- (필요성) 1인 창조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으로 충청북도 차원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 짐
- (타당성) 본 조례는 충청북도 내의 1인 창조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이외에 근거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으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령상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